

<p>논문 제목</p>	<p>초기 청소년기 방임 수준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도움요청대상 유무를 중심으로 <i>A Study on the Level of Child neglect and School Victimization -Focusing on the Help-seeking Behavior</i></p>
<p>저자</p>	<p>김준범, 최윤희(2020)</p>
<p>핵심 주제</p>	<p>방임, 학교폭력 피해, 도움요청, 잠재계층분석, 음이항 회귀분석</p>
<p>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은 오래된 문제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중 약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난해 약 5만명(1.3%), 재작년 약 3만 7천명(0.9%)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연속 피해 응답률이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응답률이 3.6%로 중학생 0.8%, 고등학생 0.4%에 비해 약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2년 연속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증가 추세에 있었다(교육부, 2019). 실제로 최근에는 인근 학교 상급학생들이 한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과 중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피해에 못이겨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연합뉴스, 2019; SBS News, 2019), 폭력피해 저연령화와 그 수위가 극심해짐이 드러났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뿐 아니라, 자살과 같은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Shafii & Shafii, 2003; Klomek et al., 2008; Hinduja & Patchin, 2010; Bauman, Toomey, & Walker, 2013; Barzilay et al., 2017). 방임피해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발생의 관계에서 주안점은 바로 보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외적으로 보호력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 하지만 가정 내에서 방임을 경험한 아동일 경우 주위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 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정서적 발달지체와 같은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Rubin, Stewart & Coplan, 1995; Rubin & Burgess, 2001, Rubin, Coplan, & Bowker, 2009; 신지현·강현아, 2018에서 재인용). 학대 및 방임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신경계의 손상 및 부정적 자아개념이 성립되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데 (Norman et al., 2012; Straus, Douglas, & Medeiros, 2013), 이는 성인 보호자로부터 완화 보호기제(buffering protection)를 제공 받는 것과 같이 도움요청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를 와해시킬 위험이 있다(Shonkoff, 2016). 사회적 위축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부정적인 발달상의 경로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이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방임 아동의 도움요청 능력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다. - 본 연구는 가정 내 방임피해 수준, 그리고 도움요청 대상 유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도가 상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각 경우의 수에 따른

	<p>폭력피해 위험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p>
연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방임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도움요청 자원 유무는 학교폭력 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방임피해와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도움요청 자원 유무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는 결과 도출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방임지표별 응답확률 값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음이항 회귀분석(NBR,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방임에 따른 잠재집단별, 그리고 도움요청 대상 유무에 따른 학교 폭력 위험비 산출을 위해 상대위험비 IRR(Incidence Rate Ratio)를 산출하였다. 분석은 SPSS 25.0, Mplus 7.0, 그리고 STATA 16.0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 연구 대상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를 위해 수집 한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며, 2014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현황을 바탕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총 11,000명의 표본 추출하였다.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부모의 방임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초기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리하여 주요변수에 대한 무응답과 결측치 등을 제외한 총 6,393명(초등학생 3,022명, 중학생 3,371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측정 도구	<p>1) 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임의 경우 지난 1년 간 가정에서 경험한 물리적 방임 3개 유형, 의료적 방임 1개 유형, 교육적 방임 1개 유형에 대해 묻는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물리적 방임은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 이다. 의료적 방임의 경우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이다. 교육적 방임은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이다. <p>2) 학교폭력 피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피해는 총 7가지 폭력유형에 대한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심한 욕설·모욕, 폭행 및 구타, 따돌림, 금품 갈취, 협박, 성희롱 및 추행, 강제적 심부름과 같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피해가 있다. <p>3) 도움요청 대상 유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요청 대상은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이웃 및 친척, 학교 담임 및 상담 선생님,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을 모두 포괄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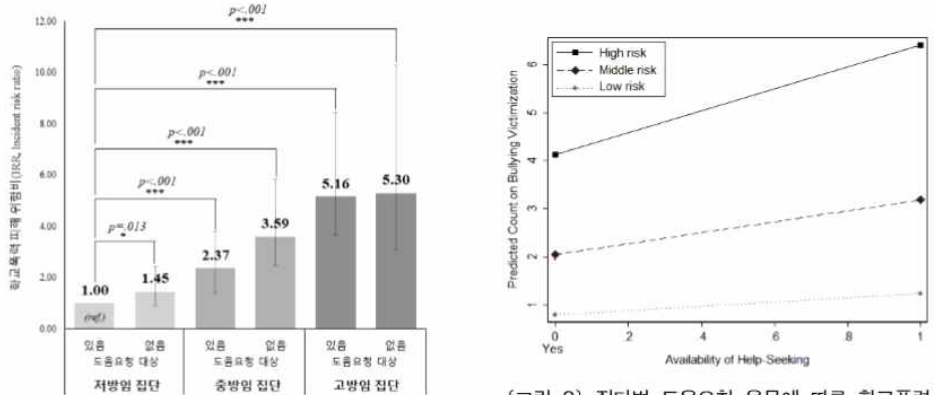
	<p>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도움요청 대상 유무를 측정하였다.</p>
<p>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 방임 수준에 따른 잠재집단을 구분한 결과, 저방임 집단, 중방임 집단, 고방임 집단으로 나누어진 3개 집단이 도출되었다. 이는 방임이 세부 유형(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에 따른 양태가 구분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즉, 고방임 집단에 서는 하위 방임 유형이 모두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로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집단별로 대별되는 맞춤형 개입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방임의 수준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사전 단계로써 학교폭력 위험비를 산출한 결과, 저방임 집단에 비해 중방임 집단의 학교폭력 위험비는 2.41배, 고방임 집단의 학교폭력 위험비는 4.85배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의 방임 및 학대 경험이 학교폭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신복기·이성진, 2012; 정하은·전종철, 2012; 한시언·장재홍, 2017; Kathryn & David, 2002; Espelage et al., 2012)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피해(poly-victimiz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1차적인 보호를 받고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물리적 보호를 제공받는다. 즉, 방임 경험은 가정 내의 보호력이 낮은 수준임을 의미하는데(Finkelhor et al., 2011), 이러한 가정환경은 정서적 박탈, 낮은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낮은 수준의 자기보호력은 비단 가정 내(intra-familial) 학대뿐만 아니라 가정 외(extra-familial) 재피해로 전이될 수 있어 방임된 아동은 학교폭력 피해에 더욱 큰 위험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제변수 중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부 변수가 검증되었다. 우선, 교급의 경우 연구모형 검증 결과,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일수록 피해위험이 1.70배나 높았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중고생에 비해 초등학생일수록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 걱정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몰라서’라는 이유로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욱 높았다(교육부, 2019). 이와 같은 요인들은 모두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해자가 취약한 피해자를 식별하기 쉬운 상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Lasky, 2019), 학교폭력 저연령화 이슈에 있어 피해 학생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별은 남자청소년일수록 폭력피해가 1.87배 더 높고, 경제수준이 중, 상일수록 약 0.5배적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폭력 피해와 같은 피해 사안에 있어 자기보고 설문을 진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일수록 축소응답 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Schneider, 1981, p.820), 남자청소년 간의 학교폭력이 여자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신체적 폭력 등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p>하지만 여자청소년에게도 피해사안이 발생하는 만큼, 전반적 경향성을 염두에 두되 여자 청소년 피해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또한 가구형태의 경우 양부모가정과 그 외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피해 발생률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은 학교폭력 피해 사안의 발생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의 물리적인 형태에 따라 폭력피해의 취약성을 언급하기보다는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잠재계층과 도움요청 대상 유무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위험비 산출 결과, ‘저방임, 있음’ 집단을 준거로 하였을 때 모든 집단에서 피해 위험비가 유의미하게 높게 검증되었다. 특히 ‘고방임, 없음’ 집단이 5.50배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방임 수준이 높고 도움요청 대상이 없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에 가장 취약함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방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도움요청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방임 수준에 따라 도움요청 대상의 유무 역시도 영향을 받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위험이 더욱 증가함을 유추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방임에 대한 학교에서의 인식 제고와 발견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현장인 만큼, 특히 방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하는 학교 교직원의 경우 연 1회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김은정, 2015; 고혜인·김성봉, 2019). 방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방임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아동방임의 발견 가능성을 낮추고 조기개입과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아동방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임에 대한 인식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 내에서 성인의 감독 및 보호 부재가 아동의 안전과 발달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방임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본 연구에서 방임 유형을 물리적, 의료적, 그리고 교육적 방임으로 나누어 잠재집단을 분석한 결과, 고방임, 중방임, 저방임 집단에서 모두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와 같은 물리적 방임이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고방임 집단의 경우 이러한 물리적 방임과 함께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에 대한 부모에 의한 돌봄 공백이 사실상 방임 및 학대 발생의 전조 증상이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다체계적 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로써 아동방임의 전조 증상인 가정 차원의 돌봄 공백 문제 발굴 및 해결 기능을 제언한다. - 또한, 학대 유형별 위험수준에 관한 연구 진행 및 위험수준별 차등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의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임이 세부 유형(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에 따른 양태가 구분되기보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즉, 모든 방임 집단

에서 하위 방임 유형이 모두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이를 통해 집단별로 대별되는 맞춤형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방임의 수준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방임 수준별 집단에서 물리적 방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고방임 초기 청소년에게는 물리적 방임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방임도 겪고 있을 공산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방임의 위험수준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 사회복지 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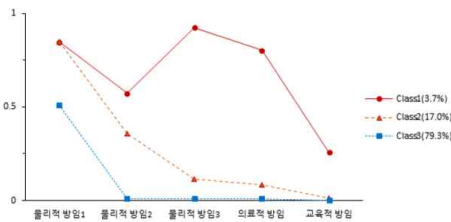
- 셋째, 방임피해 예방 및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지도, 개입방안 마련이 촉구된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방임피해가 학교폭력 피해를 연쇄적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도움요청 자원이 부재한 초기 청소년의 위험비가 더욱 크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공식적 인프라의 전문성 및 영향력 제고가 요구된다.

표



(그림 2) 집단별 학교폭력 피해 위험비

(그림 3) 집단별 도움요청 유무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예측값



(그림 1) 방임의 잠재집단별 지표반응패턴 및 조건부확률값 도식

주. 물리적 방임1=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물리적 방임2=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물리적 방임3=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의료적 방임=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
 교육적 방임=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기타

※ 본 논문은 저작자의 동의 및 허락을 받고 작성된 자료입니다.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